

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8. 7. 14

제안자 : 송은섭 의원외

□ 수정 이유

- 제정되는 조례안 중 조문 명확성과 원활한 시행을 하기 위함.

□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6조 중 “종합계획”을 “기본계획”으로 한다.
- 안 제7조제2항제1호 중 “종합계획”을 “기본계획”으로 한다.
- 안 제8조제3항 중 “회계과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, 동조 제3항제2호 중 “한국여성경제인협회”를 “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”로, 동조 제6항 중 “담당하는 부서장으로”를 “담당하는 자”로 각각 수정 한다.
- 안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“우대”를 각각 삭제함.

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6조 중 “종합계획”을 “기본계획”으로 한다.
- 안 제7조제2항제1호 중 “종합계획”을 “기본계획”으로 한다.
- 안 제8조제3항 중 “회계과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, 동조 제3항제2호 중 “한국여성경제인협회”를 “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”로, 동조 제6항 중 “담당하는 부서장으로”를 “담당하는 자”로 각각 수정 한다.
- 안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“우대”를 각각 삭제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</p> <p>제6조(계획의 수립 및 시행) 도지사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연도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제7조(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) ①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기업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</p> <p>제8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.</p> <p>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국장, 회계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</p> <p>2.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</p> <p>3. 여성기업인 대표</p> <p>4. 경제관련 단체 임직원</p> <p>5. 그 밖에 관련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</p> <p>제6조(계획의 수립 및 시행)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</p> <p>제7조(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) ①</p> <p>②</p> <p>1. 기본계획</p> <p>제8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</p> <p>②</p> <p>③ 행정국장, 경제통상국장...</p> <p>1.</p> <p>2.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.....</p> <p>3.</p> <p>4.</p> <p>5.</p>

제 정 안	수 정 안
<p>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p>	<p>④</p>
<p>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⑤</p>
<p>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.</p>	<p>⑥ 담당하는 자로 ...</p>
<p>제9조(지원사항) ① 도지사 및 투자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	<p>제9조(지원사항) ① 도지사 및 투자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
<p>1. 「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12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시 <u>우대</u></p>	<p>1. 「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12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시</p>
<p>2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 공동 계약시 참여 <u>우대</u></p>	<p>2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 공동 계약시 참여</p>
<p>3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 계약의 방법 중 수의 계약 대상자 선정시 <u>우대</u></p>	<p>3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 계약의 방법 중 수의 계약 대상자 선정시</p>
<p>4. 「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6조의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시 <u>우대</u></p>	<p>4. 「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6조의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시</p>
<p>5. 그 밖에 도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과 관련된 시책추진에 있어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시책 <u>우대</u></p>	<p>5. 그 밖에 도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과 관련된 시책추진에 있어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시책</p>